

2021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1. 2. 9.(화) 오전7시30분
-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 아시안라이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2021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1. 1. 28.

○ 이사 정수 : 9명(재적이사 9명)

○ 감사 정수 : 2명(재적감사 2명)

1. 이사회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07:30~09:50

2. 이사회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 아시안라이브

3. 임원 참석 내용

○ 참석 이사(9명) : 김종철, 김동건, 김인철, 남궁근, 문대원, 민동석, 이돈구, 정태영, 최맹호

○ 불참 이사(0명) : 없음

○ 참석 감사(2명) : 윤규섭, 임복규

○ 불참 감사(0명) : 없음

4. 이사회 안건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2)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4)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5)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개정(안)

(7)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간인(서명)	임복규	이돈구	김인철
--------	-----	-----	-----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에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9인 중 9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1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 김종철 의장이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재정소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문대원 이사(재정위원장)가 다음과 같이 재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보고하다.

재정위원회 회의결과

1. 심의결과 : 학교법인을 포함한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의 2021회계연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함.
2.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정상적인 대면 강의를 가정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가정한 예산(안)을 별도로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함.
 - 사업지원처 산하 국제사회교육원은 전년 대비 19억4천만원 증액한 34억7천만원으로 매출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했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매출처(삼성그룹 위탁교육사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규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기업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주문함.

간인(서명)

임복규

이득구

김종철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차세대 LMS시스템(학습관리시스템) 구축에 3년간 총27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년차인 2021회계연도에 약11억원을 지출할 예정임. 이는 사이버한국외대 예산 대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학교발전도약 계기로 삼고,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바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교사동 신축 부지에 대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그 이전에 제2교사동을 착공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당부.

- 이어 이태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박정식 학교법인 사무부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총액기준 한국외국어대학교(합산) 218,745백만원, 후생파트 2,205백만원, 지식출판원 2,043백만원, 산학협력단 38,188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3,401백만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169백만원, 용인한국외대 부설고등학교 16,430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법인일반 7,564백만원, 법인수익 17,541백만원, 용인제2기숙사(SPC) 4,593백만원, 글로벌홀(SPC) 3,304백만원, (주)외대어학연구소 6,872백만원, 동원안전시스템(주) 6,979백만원, (주)이지피에스 2,465백만원 등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음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하다.
- 이어 임원들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의하다.
 - (감사1)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동안 지출 총액에 맞춰 수입을 일부 여유 있게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수입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하게 편성하기 바람.
 - (이사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업부서는 인건비 등의 지출 예산 확보를 위해 수입 목표를 다소 높게 설정하여 수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수입 증가 대비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예산 통제 필요.
 - (기획조정처장) 사업부서의 인건비는 수강생 증가에 맞춰 강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수입이 줄어들

간인(서명)	임복규	이원자	김민철
--------	-----	-----	-----

게 되면 수강생 감소와 연동하여 강사료(인건비)는 줄어들 수 있음.

- (감사1) 한국외국어대학교 예산 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수입)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질문함.
- (기획조정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일정 비율 내에서 일반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제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같음.
- (이사2)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전면 비대면 강의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
- (이사3) 현재 학교법인의 수입은 대부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 있음.
- (법인사무부처장) 학교법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편임. 향후 사회변화에 맞춰 수익사업 구조를 다변화하여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겠음.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법인일반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주)외대어학연구소, 용인제2기숙사(SPC), 글로벌홀(SPC), 동원안전시스템(주), (주)이지피에스)”, “한국외국어대학교(후생파트, 지식출판원, 산학협력단 포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함)”,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각각 승인·의결하다.

□ 2021회계연도 예산 승인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20추경예산	2021본예산	승인 여부	비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합산)	222,519	218,745	원안 승인	내부거래제거
	후생파트	1,959	2,205	원안 승인	
	지식출판원	1,568	2,043	원안 승인	
	산학협력단	39,898	38,188	원안 승인	

간인(서명)	임복규	이호기	정인철
--------	-----	-----	-----

사이버한국외 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1,250	33,401	원안 승인	
	산학협력단	100	169	원안 승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16,324	16,430	원안 승인	
학교법인	법인일반	7,299	7,564	원안 승인	
	법인수익	24,090	17,541	원안 승인	
	용인 제2기숙사(SPC)	3,681	4,593	원안 승인	
	글로벌홀(SPC)	3,074	3,304	원안 승인	
	(주)외대어학연구소	3,813	6,872	원안 승인	
	동원안전시스템(주)	7,228	6,979	원안 승인	
	(주)이지피에스	1,104	2,465	원안 승인	

* 별첨 : 학교법인 및 산하학교(기관) 2021회계연도 예산서

(2)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박정식 법인사무부처장이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는 2020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약411백만원 감액된 15,912,849,824원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하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이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변동 내역은 교육청 지원금, 지자체지원금 등 이전수입 60,892천원 증가, 등록금, 수익자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472,100천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직원보수 등 인적자원운용 25,724천원 증액,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등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286,084천원 감액, 기본적 교육활동 57,145천원 감액, 선택적교육활동 153,120천원 감액, 교육활동지원 500천원 증액, 학교 일반운영 58,867천원 증액, 학교 재무활동 50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다.

* 별첨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

간인(서명)	임복규	이동기	김인환
--------	-----	-----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이 승진조건을 충족한 아프리카 연구소 소속 HK교원 1명을 2021.03.01.자로 승진시키고자 하며, 내국인 교원 2명, 외국인교원 2명을 각각 2021.02.28.자로 해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사1) 우수한 교원들이 타 대학으로 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우수 교원 확보·유지에 만전을 주문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의 원안 승인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승진(HK교원)

연번	소속학과(부)	성명	승진직급	승진조건 충족여부	승진임용일	비고
1			HK부교수	충족	2021.3.1.	

2. 해임

연번	성명	소속	직위	해임일	해임사유
1			부교수	2021.2.28.	의원해임
2			부교수	2021.2.28.	의원해임
3			조교수	2021.2.28.	의원해임
4			조교수	2021.2.28.	의원해임

(4)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으로부터 직제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받다. 첫째,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평가 대응과 교육 프로그램의

간인(서명)	임복규	이태욱	김인철
--------	-----	-----	-----

개선을 위해 총장 직속의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교수학습개발부,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을 배속하고자 한다. 둘째, 재정여건 개선과 각종 대외평가 대비를 위한 국책(정부지원)사업 유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조정처 산하에 “국책사업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교육혁신원 및 교내학과(부)들과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관리·응용 및 교육·연구활동 등을 개선하고자 기타기관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개정 조문과 함께 설명하다.

○ 이어 임원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의하다.

- (감사1) 교육혁신원, 데이터센터 등 신설 조직의 인력 배치,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기획조정처장) 교육혁신원장 등 신설 보직의 경우 학내 전임교원이 겸직할 예정이며, 소속 연구원의 경우 교육부 교육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 예정임.
- (이사1) 직제 개편에 따르면, 교육혁신원장과 교육선진화센터장 모두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게 되어 있어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중복된 보직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보직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사2) 기타기관으로 신설 예정인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교육성과관리팀” 에서도 데이터관리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며 데이터가 분산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조정처장) 교육혁신원장과 교육선진화센터장은 현재 시점에서 일부 중복성이 보일 수 있으나, 대학혁신평가지 다른 대학의 조직과 비교·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외대 조직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대하지 않음. 현재의 조직개편은 과도기적 형태로써, 향후 교육혁신원 산하에 2~3개의 센터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됨. 데이터관리 부분에서 “성과관리팀”의 데이터관리업무는 학생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혁신에 초점이 맞

간인(서명)	임복규	이우자	김인철
--------	-----	-----	-----

취져 있고,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관리업무는 언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각종 수익사업, 국책사업수주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름.

- (이사3) 대학평가에 대비하고 학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교육혁신인지의문이며, 교수와 직원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한국외대의 조직개편은 확대보다는 비효율적이고 존재가 무의미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 (총장) 교육부에서 혁신평가를 할 때는 여러 지표를 활용하는데 관련 조직과 인원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로 교육혁신 관련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 바람. 앞으로 비효율적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준비할 예정임.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겠음을 문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다.

□ 직제 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일부 수정 의결
- 수정사항 : 제35조 제2항 수정(교육선진화센터장, 교수학습개발부장 등의 직급을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변경)
- 수정사유 : 상위보직(교육혁신원장)과 하위보직(교육선진화센터장 등)간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직급을 조정함.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5)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으로부터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다. 첫째, 상위법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휴직이 가능하고,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

간인(서명)	임복규	이영자	김인철
--------	-----	-----	-----

관에 반영하고자 하며,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처우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정관 제45조제6호,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개편사항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및 평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총장 직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관련 산하 부서를 개편하고자 정관 제92조제1항, 제2항, 제8항, 제19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국책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처 산하에 “국책사업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자 정관 제92조제2항, 제10항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 셋째,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사장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자, 정관 제2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어 임원들이 정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의하다.

- 의장이 사립학교법을 준용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묻자, 이사 전원이 동의함.
- 의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은 앞서 논의했던 심의안건 제4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제92조 제19항을 일부 수정(교육선진화센터장 등의 직급 변경)하여 승인하겠음을 제안하자 이사 전원이 동의함.
- 이어 의장이 2008년 7월 사립학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사장 중임 제한을 신설한 바 있는데, 그 당시와 달리 학교법인이 안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중장기적 학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장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요청함.
- (이사1) 현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과거에 비해 재정적 역량도 향상되었고, 경영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임. 대학교는 4년에 한번씩 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이사장이 8년에 한번씩 필수적으로 교체된다면 대학교와 이사회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사장 선임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이사장 중임

간인(서명)	임복규	이원우	김인필
--------	-----	-----	-----

제한 폐지에 동의함.

- (이사2) 2008년 이사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중임제한 조항을 신설했는데, 현재 시점에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학교 구성원들은 폐지 사유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음. 대학 교육은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여 위기 상황이며, 과거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서 한국외대의 위상이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춘 이사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를 운영할 필요성 있음.
- (이사3) 전임 이사장은 정상화 단계에서 관할청이 추천하여 이사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서 대학 구성원과 학교법인이 협의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다만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는 중임 제한이 없고, 감사만 1회 중임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른 대학의 경우도 정관으로 이사장 중임을 제한하는 대학은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춰 우리 학교법인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현재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수 감소, 온라인교육 등 사회변화에 시의적절한 대응, 시대적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선이 시급하며, 각 산하 학교를 지속 가능한 일류학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이사장을 어떤 인사가 할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시스템상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법인 및 학교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 (이사4) 정관상 이사장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이사장 선임은 이사들이 결정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으므로, 향후 그 누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더라도 제약사항이 없도록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8년 학교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중임제한 조항을 두게 되었고, 현재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필요 없다면 학교법인 및 산하 학교의 장기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이사장 중임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음.

간인(서명)	임복규	이희경	김인철
--------	-----	-----	-----

- (감사1) 사립학교법에서 이사장 임기 제한을 하지 않는 입법 취지는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학교법인을 운영하라는 취지임. 현 이사장 뿐만 아니라 차기 다른 이사장과의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이사장 중임 제한을 폐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 중 제92조 제19항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겠음을 문자, 문대원 이사의 동의, 김동건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정관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일부 수정 의결
- 수정사항 : 제92조 제19항 수정(교육선진화센터장, 교수학습개발부장 직급 변경)
- 수정사유 : 상위보직(교육혁신원장)과 하위보직(교육선진화센터장 등)간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직급을 조정함.

* 붙임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개정 신·구대비표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박현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이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중 제2조(채용절차)에 외국인교원 신규채용은 별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시행세칙 적용대상에 외국인 전임교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제2조의 2(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사위원을 6인 이하로 위촉하도록 수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교무처’를 ‘교학처’로, ‘교무처장’을 ‘교학처장’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6호 안건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문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붙임과 같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신규

간인(서명)	임복규	이원	김인철
--------	-----	----	-----

채용 시행세칙(안)을 승인·의결하다.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개정 신·구 대비표

(7)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으로부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소속 교원의 임용사항으로 육아휴직 3명(), 간병휴직 1명(), 복직 2명()을 각각 승인하고자 하며, 또한, “교원 상피제 지침”에 따라 부설고 소속 교사 1명()을 태성고등학교로 파견 보내고자 하며, 동일 사유로 신갈고등학교에 파견되었던 교사 1명()은 파견 종료에 따라 부설고로 복귀시키고자 함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7호 안건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붙임과 같이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을 승인·의결하다.

*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이돈구 이사, 김인철 이사, 임복규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1년 제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2월 9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 종 철

(서명) 

간인(서명)			
--------	---	--	---

이 사	김 동 건	(서명)	김동건
이 사	김 인 철	(서명)	김인철
이 사	남 궁 근	(서명)	남궁근
이 사	문 대 원	(서명)	문대원
이 사	민 동 석	(서명)	민동석
이 사	이 돈 구	(서명)	이돈구
이 사	정 태 영	(서명)	정태영
이 사	최 맹 호	(서명)	최맹호
감 사	윤 규 섭	(서명)	윤규섭
감 사	임 복 규	(서명)	임복규

간인(서명)	임복규	이돈구	김인철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변경
제5조 (구성) ① (생략)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지원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성평등센터, AI교육원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성평등센터는 캠퍼스별로 운영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지원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u>교육혁신원</u> ,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성평등센터, AI교육원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성평등센터는 캠퍼스별로 운영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교육혁신원 신설
제13조 (기타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타기관을 둔다. 1. 학생군사교육단	제13조 (기타기관)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타기관을 둔다. 1. 학생군사교육단 2. <u>데이터센터</u>	데이터센터 신설
제16조 (교무처) ① 서울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 <u>교육선진화센터</u> 를 두고 <u>교육선진화센터</u> 산하에 <u>교육선진화팀</u> 과 <u>교수학습개발부</u> 를 둔다. ② (생략)	제16조 (교무처) ① 서울캠퍼스 교무처에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 <u>를 둔다</u> . ② (현행과 같음)	교육선진화센터 및 산하부서 소속변경, 삭제
제21조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 전략기획팀, 예산조정팀, 평가감사팀을 둔다.	제21조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 <u>국책사업 통합추진단</u> , 전략기획팀, 예산조정팀, 평가감사팀을 둔다.	국책사업 통합추진단 신설
(신설)	<u>제24조의 5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에 교육선진화센터</u> 를 두고 <u>교육선진화센터 산하에 교수학습개발부,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u> 을 둔다.	교육혁신원 신설, 교육선진화센터 및 산하부서 개편 (교육선진화팀 명칭변경, 교육성과관리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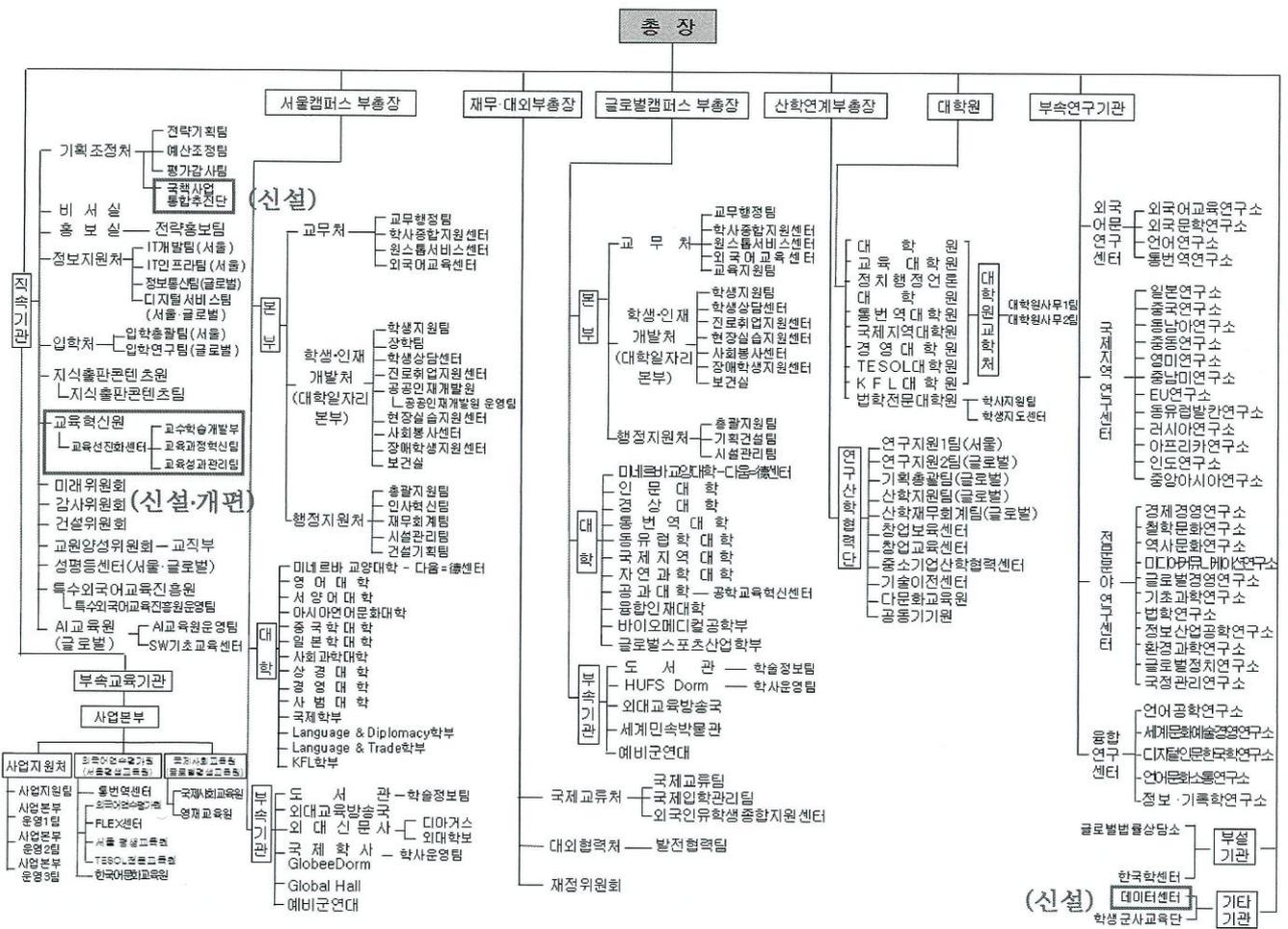
간인(서명)	임복규	이두자	김인철
--------	-----	-----	-----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5조 (직위)</p> <p>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p> <p>1. ~ 14. (생략)</p> <p>15. ~ 25.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 센터장</p> <p>26. ~ 34. 기타 위 각 호 이외의 보직은 따로 정한다.</p> <p>② 1. 전항 제1호 내지 제25호는 조교수(예비군연대는 예외로 한다) 이상으로 보하되, 제1호 각 처장(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제2호 학장, 제3호 대학원장, 교학처장, 제4호 도서관장, 세계민속박물관장, 제5호 사업본부장, 사업지원처장, 원장(영재교육원은 예외로 한다), 센터장, 제7호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제9호 미래위원회 위원장, 제13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제14호 AI교육원장, 제22호 교육선진화센터장, 제23호 교수학습개발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제26호 내지 제31호는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2. 행정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기획조정부처장, 입학부처장, 행정지원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p> <p>3. (생략)</p> <p>4.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운영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에는 센터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둔다.</p>	<p>제35조 (직위)</p> <p>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교육혁신원 : 원장</p> <p>16. ~ 26.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 센터장</p> <p>27. 데이터센터 : 센터장</p> <p>28. ~ 36. 기타 위 각 호 이외의 보직은 따로 정한다.</p> <p>② 1. 전항 제1호 내지 제27호는 조교수(예비군연대는 예외로 한다) 이상으로 보하되, 제1호 각 처장(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제2호 학장, 제3호 대학원장, 교학처장, 제4호 도서관장, 세계민속박물관장, 제5호 사업본부장, 사업지원처장, 원장(영재교육원은 예외로 한다), 센터장, 제7호 연구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제9호 미래위원회 위원장, 제13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제14호 AI교육원장, 제15호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며, 제28호 내지 제33호는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2. 행정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부처장, 입학부처장, 행정지원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진로취업지원센터, 공공인재개발원 운영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및 데이터센터에는 센터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는 팀장을 둔다.</p>	<p>교육혁신원장, 데이터센터장 호 신설 호번호 순연</p> <p>교육혁신원장 신설 교육선진화센터장, 교수학습개발부장 직급 변경 (부교수→조교수 이상) 호번호 순연</p> <p>국책사업 통합추진단장 신설</p> <p>데이터센터 신설</p>

간인(서명)	임복규	이영우	김인철
--------	-----	-----	-----

현행	개정(안)	비고
제38조 (임기) ① 각 보직교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총장, 처장, 대학원장, 학장, 학부장, 부속기관·부속연구(교육)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연구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 홍보실장,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AI교육원장, 센터(소, 원)장, 부처장 : 2년	제38조 (임기) ① 각 보직교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총장, 처장, 대학원장, 학장, 학부장, 부속기관·부속연구(교육)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교육혁신원장 , 연구산학협력단장과 부단장, 홍보실장,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AI교육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 센터(소, 원)장, 부처장 : 2년	교육혁신원장, 국책사업 통합추진단장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1> 기구표 개정안



간인(서명) **임복규** **이희우** **김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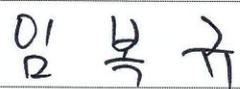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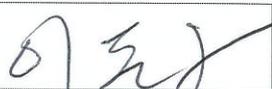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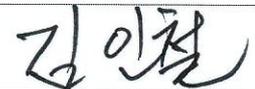
(붙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조~제25조(생략)	제1조~제25조(현행과 같음)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장 중임 제한 폐지
제26조의2~제44조(생략)	제26조의2~제44조(현행과 같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제44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5. 좌동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휴직 기간 변경 (사립학교법 제59조 관련)
제46조(생략)	제46조(현행과 같음)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생략)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년수에서 제외한다. 단, 제44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좌동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시 행령을 준용한다. ③교원이 근무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재직년수에서 제외한다. 단, 제44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하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휴직교원의 처우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시 행령을 준용한다.	제44조 제7호 사유에 따른 봉급 지급 기준 신설 (사립학교법 제59조 관련) 문구 삽입
제48조~제91조(생략)	제48조~제91조(현행과 같음)	
제92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지원처, 지식출판콘텐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및 성평등센터를 두되 교원양성	제92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지원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및 성평등센터를 두	교육혁신원 신설

간인(서명)	임복규	이영자	김인철
--------	-----	-----	-----

현행	개정	비고
<p>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성평등센터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p> <p>②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본부)장, 국제교류처장, 정보지원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기획조정부처장, 입학부처장, 행정지원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p> <p>③ ~ ⑦ (생략)</p> <p>⑧ 서울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u>외국어교육센터, 교육선진화센터</u>를 두고 <u>교육선진화센터 산하에 교육선진화팀과 교수학습개발부를 둔다.</u> 입학처에 입학총괄팀, 입학연구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지원팀을 둔다. <u>교육선진화센터장과 교수학습개발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u> 외국어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u>보하며</u>,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⑨ (생략)</p> <p>⑩ 기획조정처에는 전략기획팀, 예산조정팀, 평가감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⑪ ~ ⑬ (생략) <신설></p> <p>⑭ 제1항 내지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성평등센터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p> <p>②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본부)장, 국제교류처장, 정보지원처장, <u>교육혁신원장은</u>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 대외협력처장, 지식출판콘텐츠원장, <u>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u>, 기획조정부처장, 입학부처장, 행정지원부처장, 대외협력부처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부장대우 이상으로 보한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서울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u>외국어교육센터</u>를 둔다. 입학처에 입학총괄팀, 입학연구팀을 두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에는 교무행정팀, 학사종합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육지원팀을 둔다. 외국어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u>보하고</u>,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⑩ 기획조정처에는 <u>국책사업통합추진단</u>, 전략기획팀, 예산조정팀, 평가감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p> <p>⑪ ~ ⑬ (현행과 같음)</p> <p>⑭ <u>교육혁신원에는 교육선진화센터를 두고 교육선진화센터 산하에 교수학습개발부, 교육과정혁신팀, 교육성과관리팀을 둔다. 교육선진화센터장과 교수학습개발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교육과정혁신팀장과 교육성과관리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u></p> <p>⑮ 제1항 내지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교육혁신원장, 국책사업통합추진단장 신설</p> <p>교육선진화센터 소속변경</p> <p>자구수정</p> <p>국책사업통합추진단 신설</p> <p>향 신설 교육선진화센터장, 교수학습개발부장 직급 변경 향 순연</p>
제92조의 2~제132조(생략)	제92조의 2~제132조(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p>제2조 (채용절차) ① (생략) ② 매 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인원 및 채용 전공분야는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절차는 기초심사, 전공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단, <u>외국인교원의 신규채용은 외국인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u> ④ (생략)</p>	<p>제2조 (채용절차) ① (생략) ② 매 학년도 신규교원 채용인원 및 채용 전공분야는 당해 학부(과) 교수회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절차는 기초심사, 전공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삭제> ④ (현행 동일)</p>	<p>단서 삭제</p>
<p>제2조의 2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위원, 전공심사위원 및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장과 <u>교무처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학부(과)장이 해당 학부(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초빙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u>위촉하여 구성한다.</u> 심사위원장은 학부(과)의 심사위원명단과 외부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명단을 <u>교무처</u>로 제출한다. 학부(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수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이 <u>교무처장</u>과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 ⑥ (생략)</p>	<p>제2조의 2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위원, 전공심사위원 및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부(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부(과)장과 <u>교학처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학부(과)장이 해당 학부(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초빙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u>위촉하여 6인 이하로 구성한다.</u> 심사위원장은 학부(과)의 심사위원명단과 외부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명단을 <u>교학처</u>로 제출한다. 학부(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수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이 <u>교학처장</u>과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 ⑥ (현행 동일)</p>	<p>자구 수정 보직 명칭 반영</p>
<p>부 칙 (1) ~ (4) (생략)</p>	<p>부 칙 (1) ~ (4) (현행 동일) (5)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u>개정시행한다.</u></p>	<p>부칙 신설</p>

간인(서명)	임복규	이동자	김인철
--------	-----	-----	-----

(붙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휴직

연번	성명	교과	성별	생년월일	휴직사유	휴직 기간	복직예정일	비고
1								
2								
3								
4								

2. 복직

연번	성명	교과	성별	생년월일	휴직사유	휴직 기간	복직예정일	비고
1								
2								

3. 파견

연번	성명	교과	성별	생년월일	파견사유	파견기간	비고
1							

4. 파견복귀

연번	성명	교과	성별	생년월일	파견사유	파견기간	복귀예정일	비고
1								

간인(서명)	임복규	이희자	김인철
--------	-----	-----	-----